

4.1.31 자체평가운영규정

제정 2009. 11. 10.
개정 2018. 07. 26.
개정 2018. 10. 23.
개정 2020. 02. 05.
개정 2022. 06. 09.
개정 2024. 04. 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및 학칙 제79조(자체평가)에 따라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4.04.01.〉

제2조(적용범위) 자체평가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자체평가의 정의) 본 대학이 대학 자체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자체진단평가위원회 등)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IR센터 산하에 자체진단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18.07.26., 2018.10.23., 2020.02.05., 2022.06.09., 2024.04.01.〉

② 위원회는 전임교수와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을 IR센터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18.07.26. 2020.02.05., 2022.06.09., 2024.04.01.〉

제5조(자체진단평가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〈개정 2020.02.05.〉

1. 대학자체평가 지표 개발
2. 대학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
3.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4. 자체평가 결과 보고
5. 그 밖에 자체평가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자체평가 시기) 자체평가의 시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제7조(자체평가 방법) 자체보고서, 계획서 등 결과를 토대로 사실 확인,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에서 실시한다.〈개정 2020.02.05.〉

제8조(평가영역과 평가지표)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〈개정 2020.02.05.〉

제9조(자료의 제출) ① 위원회는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02.05.〉

1. 관련 교수 및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
2. 평가관련 자료 제출 요구

② 총장은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제10조(평가결과의 활용)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발전계획 수립,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·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평가결과 우수 학과 및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 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연구수당) 위원회 위원에게는 평가업무수행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<개정 2020.02.05.>

제13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본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“대학자체평가위원회규정”에 의하여 대학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원의 임기는 기존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